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7. 19 선고 2021가단5012370 판결 [연대보증금 등 청구의 소]

재판경과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6. 16 선고 2022나47980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7. 19 선고 2021가단5012370 판결

전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엘에프

담당변호사 김선진

피 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그린

담당변호사 조태천

변론종결 2022. 6. 21.

판결선고 2022. 7. 19.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8,707,410원 및 그 중 117,296,950원에 대하여 2021. 2.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1. 10.경부터 주식회사 C을 공동으로 운영하다가, 2014. 12.경 주식회사 C을 D에게 양도하였다.

나. E는 철근반장, F, G은 목수반장의 역할을 담당하던 자로서, 주식회사 C의 현장소장 역할을 하였다.

다. E, F, G이 2014. 11. 24. 원고에게 작성한 차용증 및 지급각서(별지 기재와 같다)에 대하여, 피고는 연대보증인으로 무인을 날인하거나, 서명하였다(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피고, E, F, G 4인은 주식회사 C의 현장공사를 진행하다가 초과공사비가 발생하여 이를 원고에게 우선 지급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원고는 이를 대출을 받아 먼저 지급하고,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받은 것이다. 2021. 1. 15. 기준으로, ① E의 차용원리금은 27,068,460원(원금 19,758,000원)이고, E는 2014. 12. 27.부터 2019. 5. 2.까지 3,200,000원을 변제하였으므로, E의 차용원리금은

23,868,460원 및 그 중 원금 19,758,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남게 된다. ② F의 차용원리금은 27,400,000원(원금 20,000,000원)이고, F은 2014. 12. 30. 이자 100,000원을 변제하였으므로, F의 차용원리금은 27,300,000원 및 그 중 원금 20,000,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남게 된다. ③ G의 차용원리금은 2015. 7. 15.경 원금 57,806,950원이었는데, 2015. 1. 15. 이자 1,000,000원을 변제한 이외에는 지급하지 아니하므로, 약정지급액 77,538,950원(= 57,806,950원 + 73개월분 이자 20,732,000원(= 284,000원 × 73개월)- 선지급이자 1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이 남게 된다. 따라서 연대보증인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① 이 사건 차용증 기재와 같은 차용사실이 없다. ② E가 2012. 11. 6., 2014. 2. 8., 2014. 4. 17. 원고에게 18,482,760원을 송금한 바 있고, F이 2014. 4. 30. 원고에게 23,000,000원을 송금한 바 있으며, 피고는 2014. 1. 29.부터 2014. 9. 5. 원고에게 49,000,000원을 송금한 바 있으므로, 각 대여금채권으로 상계한다. ③ 이 사건 차용증에 기한 채무는 소멸시효가 도과하여 소멸하였다.

나. 판단

(1) 차용 및 연대보증이 있었는지 여부

일반적으로 처분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문서에 표시된 의사표시의 존재와 그 내용을 부정할만한 분명하고 수긍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되는 법률행위의 존재를 인정하여야 할 것인바, 피고는 2022. 4. 4. 의견서를 통하여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 서명한 사실을 인정하였고, 원고와 피고의 동업관계가 종료된 시점 가까이 이 사건 차용증이 작성되었으며, 원고와 피고 측(E, F, G) 사이에 공사비 정산을 두고 금전거래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차용증은 원, 피고 사이의 동업관계가 종료되면서 금전관계를 정산하는 취지로 작성된 처분문서로 봄이 타당하므로, E, F, G의 차용사실과 피고의 연대보증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상계 항변에 대하여

보건대, 피고가 주장하는 대여금채권들은 모두 이 사건 차용증 작성일 이전의 송금내역을 기초한

것이고, 달리 대여사실을 뒷받침할 자료도 제출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대여금채권이 존재함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이를 전제로 한 상계항변은 이유 없다.

(3) 소멸시효 항변에 대하여

이 사건 차용증란 상환계획에 기재된 지급기한이 2018. 12. 30.과 2020. 12. 30.이므로, 위 시점을 변제기한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2021. 1. 19. 제기된 이 사건 소가 소멸시효가 도과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연대보증인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원리금 128,707,410원(= 23,868,460원 + 27,300,000원 + 77,538,950원) 및 그 중 원금 117,296,950원(= 19,758,000원 + 20,000,000원 + 77,538,95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인 2021. 2.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동호

차용증 및 지급각서

성명 : (인)

주민번호:

전화번호:

위 본인은 연대보증인()을 통하여 이사로부터 2013.01월

₩17,800,000원(차용원금)을 노무비로 차용한 금액과, 2013.02월부터 2014.11월까지의

차용이자(₩1,958,000원)도 상환할것을 약속합니다.

2014.12월부터 매월 15일마다 (원금, 이자모두 상환까지) 합계금액의 이자6%금액

(₩19,758,000원*6%/12=₩98,790)을 이사 계좌(신한,)로

상환지급하여, 아울러 아래 상환계획대로 지급 할 것을 약속합니다.

원 매매(양도) 후, 본인이 책임졌던 노무비로 인한(, 등), 벌금 및 세금이

발생하면, 책임 질 것도 약속 합니다.

*3자 합의하에 인감증명서와 공증 생략하나, 분쟁시 공증의 효력이 있음을 확인함

*이자6%는 원금상환시 변동됨

상환계획(월, 약40만)

<참 조>

차용원금	17,800,000
차용이자	1,958,000
(2013.02—2014.11까지 이자)	
(₩17,800,000*6%/12*22)=1,958,000	
합 계 금 액	19,758,000

이자, 매월15일	98,790
2015.12.30까지	5,000,000
2016.12.30까지	5,000,000
2017.12.30까지	5,000,000
2018.12.30까지	4,958,000
합 계 금 액	19,958,000

2014. 11. 24

연대보증인:

귀하

차용증 및 지급각서

성명 :

주민번호:

전화번호:

위 본인은 이로부터 ₩20,000,000원을 차용하였음을 확인하고, 차용원금 상환까지
2014.11월부터 매월 15일마다, 계좌(신한은행,)로,

이자6%(아래참조-₩100,000원)도 상환지급 할 것을 약속합니다.

아울러, 아래 상환계획대로 지급할 것도 약속합니다.

위 매매(양도)후, 본인이 책임졌던 노무비로 인한(, 군부대공사등), 벌금 및 세금이
발생하면, 책임 질 것도 약속 합니다. 잔액도(약₩1,800,000원) 위본인이 해결함.

*이자6%는 원금상환시 변동됨

*공증 생략하나, 분쟁시 공증의 효력이 있음을 확인함

*미지급 이자 발생시 ——(차용합계 + 미지급 이자)*6%이자로 약속함

<참 조>

차용원금	20,000,000
차용이자	100,000
(₩20,000,000*6%/12)=100,000	

상환계획

이자, 매월15일	100,000
2015.12.30까지	5,000,000
2016.12.30까지	5,000,000
2017.12.30까지	5,000,000
2018.12.30까지	5,000,000
합 계	20,000,000

2014. // . 14

연대보증인:

귀하

차용증(채권양도포함) 및 지급각서

성명: 주민번호:

위 본인은 및 공사건으로 ㈜ 에서 기성및 준공금을 수령후, 본인이 미지불(₩5,641,500)한 세금계산서금액 및, ㈜ 의 연말 자본금 이자(₩5,087,450원-2012년,2013년)와, ㈜ 이 기지급한 차액(₩1,078,000원)을 차용하였음을 확인하고(뒷장 참조),
 ㈜ 이 매매(양도)되더라도, 본인의 차용합계금액(아래참조)은 에게 양도됨을 확인합니다.아울러 계좌(신한은행,)로, 차용합계금액 상환(아래참조)까지, 2015년 01월부터 이자₩284,000원(뒷장참조)을 매월15일마다(아래참조—차용합계:₩72,806,950원 상환시까지) 지급하고, 아래와 같이 상환계획을 세워 차용합계금액과 이자를 상환 할 것을 약속합니다.
 ㈜ 매매 후, 및 공사건으로 인한 ,세금계산서 , 노무비와 관련하여 ,벌금 및 세금이 발생하면 책임 질 것도 약속합니다.

※3자 합의하에 인감증명서와 공증 생략하나, 분쟁시 공증의 효력이 있음을 확인함

(3자: , ,)

※미지급 이자 발생시 —(차용합계 + 미지급 이자)×6%이자로 약속함

차용미불금액 및 자본금이자

계산서합계금액	65,641,500
차액	1,078,000
2012년 자본금이자	3,938,490
2013년 자본금이자	2,148,960
2014.12월 현재차용합계	72,806,950

상환계획

이자 매월 15일지급	
2015.12.30	12,000,000
2016.12.30	12,000,000
2017.12.30	12,000,000
2018.12.30	12,000,000
2019.12.30	12,000,000
2020.12.30	12,806,950
차 용 합 계	72,806,950

2014 . 11 . 23 .

연대보증인:

귀하

상 호	금액(월)	지급일
(₩20,680,000원)	5,280,000 (4월)	2014.12.10.입금예정
	9,240,000 (8월)	
	6,160,000 (9월)	
(₩9,022,000원)	5,242,600 (8월)	2014.05.02.입금
	3,278,000 (9월)	₩10,100,000원(이자포함)
	501,600 (11월)	
	2,115,850 (8월)	2014.01.29.입금
	3,485,500 (9월)	2013.12.31.입금
	26,340,000 (9월)	2013.10.30.입금
		₩8,000,000원 1/29입금
		₩3,340,000원 3/04입금
		잔액-₩15,000,000원
	3,997,950 (5월)	2014.08.13.입금(2백만)
		₩1,000,000원 2014.12.10입금예정
		잔액 ₩997,950원 차용증- 전달

합 계 금 액 65,641,500

1.2012년 자본금 이자(합계금액*3부*2개월)

$65,641,500 \times 0.03 \times 2 = 3,938,490$ 원

2.2013년 자본금 이자((합계금액-)*3부*2개월)

$((65,641,500 - 3,485,500 - 26,340,000)) \times 0.03 \times 2 = 2,148,960$

3.이자계산(+자본금이자)*6%)

$((10,100,000 + 5,115,850 + 3,485,500 + 11,340,000 + 20,680,000 + 6,087,450)) \times 6\% = 284,044$

4.2011년 자본금이자 는 제외함

5. ₩15,000,000원 미지급증(이사 집 압류증) 2014.12.25.해결

*이자6%는 원금상환시 상환시 변동됨

